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8510
------	-------

제안연월일 : 2026. 4. .

제안자 : 정무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2200830	이학영의원	2024.6.24.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24.8.2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
2207411	송기현의원	2025.1.10.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25.4.2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
2208242	강명구의원	2025.2.18.	
2209237	김승원의원	2025.3.21.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5.8.26.)
2210446	박덕흠의원	2025.5.9.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25.8.2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
2210804	윤한홍의원	2025.6.13.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2214819	이헌승의원	2025.12.3.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2026.3.31.)
2216110	이인영의원	2026.1.16.	

가.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6.4.1.)에서 위 8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나. 제433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26.4.2.)는 위 8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유족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나이 많은 사람이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은 나이에 따른 차별을 발생하게 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 기준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음(2024헌가12).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상금 지급 순위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

가 이뤄지지 않고,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위 기준으로도 보상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정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또한,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연령 제한 기준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문제에 대한 별도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시행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제51조제6항 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전단 중 “나이가 많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법률 제21364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75세”를 “65세”로 한다.

제53조의4 및 제53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3조의4(고독사 예방 및 관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보상대상자를 고독사(「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5(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3조의4제2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이하 “형사사법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는 국가보훈부장관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제공기관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공기관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70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53조의4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제75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53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1조제6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12조제2항제3호·제4호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제2조(위탁 의료기관 감면 진료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받는 진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상금 등의 지급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선순위자로서 보상금 및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던 사람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선순위자로서 보상 등을 받는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보상금 지급순위)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p> <p>1. 2. (생략)</p> <p>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u>나이가 많은</u>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같은 순위자가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인 때에는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분할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신 설></p> <p>③ · ④ (생략)</p>	<p>제12조(보상금 지급순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u>----- ----- ----- ----- ----- ----- -----.</p> <p>4. <u>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u></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3조의5(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3조의4제2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이하 “형사사법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는 국가보훈부장관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제공기관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공기관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을 위반하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략)

<신설>

3. (생략)

② (생략)

-----.

1.·2. (현행과 같음)

2의2. 제53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